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입주자모집공고(정정)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6.10.29.(목) 공고한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10.30.(금)일자로 정정공고 합니다.

■ 유의사항

구분	해당 페이지	정정내용
정정 전	56 페이지	• 용인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구성초, 중학생은 기흥2중학군,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가능함.
정정 후	56 페이지	• 용인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구성초, 중학생은 구성중학교,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가능함.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100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정	2026.10.29.(목)	2026.11.09.(월)	2026.11.10.(화)	2026.11.11.(수)	2026.11.12.(목)	2026.11.18.(수)	2026.11.21.(토)~ 2026.11.25.(수)	2026.11.30.(월)~ 2026.12.02.(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1899-1008)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

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 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중앙하이츠구성플랫폼시티.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9.(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

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2024.10.29.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6.11.09.(월)	2026.11.10.(화)	2026.11.11.(수)	2026.11.12.(목)	2026.11.18.(수)	2026.11.21.(토)~ 2026.11.25.(수)	2026.11.30.(월)~ 2026.12.02.(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홍보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홍보관 (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9-1, 1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예외1)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2) 2025.03.3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신청자 본인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본인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당첨 가능합니다(혼인특례 사용하여 청약신청).

※ (예외3)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한「주택법」제6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주택법」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 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기흥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기흥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부공고 2025-1219호)으로서,「주택법」제15조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2026.06.1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주택정비과 -30966호(**2026.10.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9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최고 15층, 2개동, 총 130세대[조합원 54세대] 중 일반분양 76세대

[특별공급 35세대(기관추천 5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신생아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35	01	059.9670A	59A	59.9670	17.9773	77.9443	45.0934	123.0377	35.3839	18	1	2	3	1	2	2	11	7	2
	02	059.9898B	59B	59.9898	17.9195	77.9093	45.1106	123.0199	35.3680	13	1	1	2	-	1	1	6	7	1
	03	068.9683	68	68.9683	21.2547	90.2230	51.8621	142.0851	40.9580	5	-	-	-	-	-	1	1	4	1
	04	074.9857	74	74.9857	23.1114	98.0971	56.3870	154.4841	44.5326	23	2	2	3	1	2	1	11	12	2
	05	079.9780	79	79.9780	25.7043	105.6823	60.1411	165.8234	47.9760	12	1	1	1	-	1	1	5	7	1
	06	084.9932	84	84.9932	25.4468	110.4400	63.9125	174.3525	50.1358	5	-	-	1	-	-	-	1	4	2
	합 계									76	5	6	10	2	6	6	35	41	9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 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적 산정 시 소수점 처리에 따라 세대별 면적의 합계와 전체 면적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배정 세대 중 청약 미달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670A	059.9898B	068.9683	074.9857	079.9780	084.9932
약식표기(타입)	59A	59B	68	74	79	84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A	59B	68	74	79	84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	-	-	1	-	-	**1**
	장애인	경기도	-	-	-	1	-	-	**1**
		서울특별시	-	-	-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용인시 2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	50%	1	1	-	1	1	-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	-	-	1	-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2	-	3	1	1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	1	-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2	1	-	2	1	-	**6**
신생아 특별공급			2	1	1	1	1	-	6
합 계			**11**	**6**	**1**	**11**	**5**	**1**	**3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동 구분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027.01.25.	2차(10%) 2027.04.25	3차(10%) 2027.07.25	4차(10%) 2027.10.25	5차(10%) 2028.01.25	6차(10%) 2028.04.25	입주 지정일
59A	102동 (1,2호)	2층	2	183,500,000	393,800,000	577,30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57,730,000	173,190,000
		4층	1	187,700,000	402,700,000	590,40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177,120,000
		5~8층	4	193,400,000	414,900,000	608,30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60,830,000	182,490,000
		9~12층	7	197,000,000	422,600,000	619,60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61,960,000	185,880,000
		13층이상	4	198,700,000	426,300,000	62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59B	101동 (4호)	2층	1	183,600,000	394,000,000	577,60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173,280,000
		3층	1	186,100,000	399,200,000	585,30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58,530,000	175,590,000
		4층	1	187,800,000	402,900,000	590,70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59,070,000	177,210,000
		5~8층	4	193,500,000	415,100,000	608,60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60,860,000	182,580,000
		9~12층	4	197,100,000	422,800,000	619,90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61,990,000	185,970,000
		13층 이상	2	198,800,000	426,500,000	625,30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62,530,000	187,590,000
68	102동 (4호)	1층	1	209,200,000	448,900,000	658,10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65,810,000	197,430,000
		2층	1	210,500,000	451,700,000	662,20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66,220,000	198,660,000

		9~12층	2	225,900,000	484,700,000	710,60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71,060,000	213,180,000
		13층 이상	1	227,900,000	488,900,000	716,80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71,680,000	215,040,000
74	101동 (3호) 102동 (5호)	1층	2	225,100,000	483,000,000	708,10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70,810,000	212,430,000
		2층	2	226,600,000	486,000,000	712,60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213,780,000
		3층	2	229,400,000	492,200,000	721,60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72,160,000	216,480,000
		4층	2	231,500,000	496,800,000	728,30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218,490,000
		5~8층	6	238,700,000	512,100,000	750,80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75,080,000	225,240,000
		9~12층	7	243,000,000	521,400,000	764,40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76,440,000	229,320,000
		13층 이상	2	245,200,000	525,900,000	771,10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77,110,000	231,330,000
79	102동 (3호)	1층	1	240,200,000	515,400,000	755,60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75,560,000	226,680,000
		2층	1	241,800,000	518,600,000	760,40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228,120,000
		3층	1	244,800,000	525,300,000	770,10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77,010,000	231,030,000
		5~8층	4	254,600,000	546,300,000	800,90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80,090,000	240,270,000
		9~12층	2	259,200,000	556,200,000	815,40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244,620,000
		13층 이상	3	261,600,000	561,100,000	822,70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246,810,000
84	101동 (1,2호)	1층	2	251,000,000	538,600,000	789,60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78,960,000	236,880,000
		2층	2	252,600,000	542,000,000	794,60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79,460,000	238,380,000
		9~12층	1	270,900,000	581,200,000	852,10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255,63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 기한 내에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나이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 공간 등은 재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면적 산정 시 소수점 처리에 따라 세대별 면적의 합계와 전체 면적의 합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 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 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 정리, 진입로(가감속 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 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열쇠인수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나누어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 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 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의 분양 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 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나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혼인 전 이력 배제)	**신생아**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able>
<tr><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tr>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td></tr>
</table>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table>
<tr><th>구 분</th><th>관련법규</th><th>해당기관</th></tr>
<tr><td>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인천보훈지청복지과</td></tr>
<tr><td>장애인[청약통장 불필요]</td><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td>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td></tr>
<tr><td>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
<tr><td>중소기업근로자</td><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거주자 50% →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단, 우선공급 물량에서 경쟁 발생 시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잔여물량에서 재경쟁 시 지역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tr><th>배점항목</th><th>총배점</th><th>배점기준</th><th>비고</th></tr>
</table>
</td></tr>
</table>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주민등록표 등·초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2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4"></td><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10">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10">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r><td colspan="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td>비고</td><td colspan="5">■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td></tr>
</table>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형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td></tr>
</table>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
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
원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의 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 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td></tr>
</table>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
토지)</td><td rowspan="2">3억
3,100만
원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 일 것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0%	3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인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6.11.09.(월) - 청약Home인터넷: 09:00~17:30 - 사업주체 홍보관:10:00~14:00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홍보관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9-1, 1층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경기도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6.11.10.(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경기도 용인시 2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6.11.11.(수) 09:00~17:30		
	2순위		2026.11.12.(목)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8.(수) ~ 2026.11.27.(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18.(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입주대상자(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구분	서류 제출 기한	접수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일반공급)	**2026.11.21.(토) ~ 2026.11.25.(수)** 10:00 ~ 16:00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9-1, 1층)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 검증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서 / 서약서		• 홍보관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홍보관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발급/ 발급용도: 특별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한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반드시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및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대체
다자녀 가구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홍보관 비치 ※ 배점검산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 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 자녀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ㆍ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생아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홍보관에 비치(모집공고일기준 2세 미만(5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 확인, 월평균 소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세)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표1 참조>**
	○		재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소득이 있는 자만 제출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시 회사직인 날인 필수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세대구성원 포함)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아래 <표1> 소득입증 제출서류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의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제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2>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아래 <표2>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아래 <표2> 자산입증서류 참고**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

					함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가구원수 산정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홍보관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증인 경우(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포함)표시로 발급 **<표1 참조>**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포함) **<표1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홍보관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2 참조>**
			부동산 보유 확약서		• 홍보관 비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세대원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표2 참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		노부모 가점 산정표	-	• 홍보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관계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포함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사실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세)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배우자는 제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포함 "상세" 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홍보관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통산하여 5개년도 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홍보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포함)표시로 발급 **<표1 참조>**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포함) **<표1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홍보관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표2 참조>**
		○	부동산 보유 확약서		• 홍보관 비치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세대원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표2 참조>**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이 미혼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및직계존비속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인감도장		• 날인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팩스불가, 출산 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이하 같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	①,② 해당직장

		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 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이하 같음)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또는 원천징수이행명세서(직인날인)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완납 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하셨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서류

해당자격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서(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조회/발급>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외 : '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전국 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상기 발급 서류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 입주자 포함)	○		서약서	본인	• 홍보관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 주택공급 계약 / 제출처 :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세대주와의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자녀수에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반드시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및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 입주자)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홍보관 비치 ※ 가점 산정용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청약통장 가입확인용>청약하고자하는주택명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방문>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확인서		• 일반공급 가점제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또는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인감도장		• 날인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2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번호뒷자리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중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연속적인 납부 실적이 아닌,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파기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장소
정당 당첨자	2026.11.30.(월) ~ 2026.12.02.(수) 3일간 (10:00 ~ 16:30)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홍보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9-1, 1층)
예비 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홍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 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용(대리인 발급 불가) / 발급용도 : 주택공급 계약 / 제출처 : 중앙하이츠 구성 플랫폼시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본인	• 홍보관 비치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		위임장	본인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4-673569	마북298의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외 2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59A, 59B, 68, 74, 79, 84)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4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 10%(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대납 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 (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사업주체/분양계약자 각1/2 납부)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 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당첨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홍보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 받은자는 전매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 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분양권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 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②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아파트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③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 ·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확장금액	계약금(20%)	잔금(80%)
		계약 시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A	18,000,000	3,600,000	14,400,000
59B	16,800,000	3,360,000	13,440,000
68	18,000,000	3,600,000	14,400,000
74	18,700,000	3,740,000	14,960,000
79	19,800,000	3,960,000	15,840,000
84	19,800,000	3,960,000	15,84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확인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부탁드립니다. (예시 1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신한은행	100-036-320689	씨에이이앤씨주식회사 김윤하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옵션제품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본 유상옵션은 일반분양 세대를 위한 리스트이며, 조합분양세대 유상옵션 리스트는 별도로 홍보관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미건립세대인 59A, 59B, 68, 79, 84타입 옵션은 건립세대인 74타입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옵션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옵션 마감 및 옵션 가구 구성, 길이,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옵션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의 평형별로 거실 우물천장 및 주방 천장의 형태, 규격,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
- 유상옵션의 마감에 따라 공간내부 규격이 축소될 수 있으며, 옵션 마감길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옵션제품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설치대수	설치위치	제조사명
		계약 시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A	6,677,000	1,335,400	5,341,600	4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59B	6,677,000	1,335,400	5,341,600			
68	6,677,000	1,335,400	5,341,600			
74	6,820,000	1,364,000	5,456,000			
79	6,820,000	1,364,000	5,456,000			
84	6,820,000	1,364,000	5,456,000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금액은 유상옵션 미 선택시 설치되는 기본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 배관은 거실(스탠드 에어컨용), 침실1(벽걸이 에어컨용) 2개소에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는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 (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 제외)에는 냉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옵션 선택에 따른 배관 길이 및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에어컨 공사 시점에 생산되는 동등사양의 모델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공기청정기능 없음)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드레인 배관은 타입에 따라 발코니(~~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천장에서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 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골조 공사 완료 후 시스템 에어컨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매립 냉매 배관(거실, 침실1)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 완료 후 계약자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할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 추가설치(2단설치 또는 용량증설 등)는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관중문+시트판넬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고**
		계약 시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A	1,177,000	235,400	941,600	-
59B	1,177,000	235,400	941,600	

68	1,056,000	211,200	844,800	
74	1,100,000	220,000	880,000	
79	979,000	195,800	783,200	
84	1,089,000	217,800	871,200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평형별로 현관 중문의 형태와 디자인, 규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별 구동방식, 사양, 규격이 상이하며, 가구의 규격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중문 미설치, 시트판넬은 도배마감으로 설치 됩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하부레벨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디테일 (상하부 레일, 하드웨어, 악세사리 등) 및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신발장 도어 (1면 전체 브론즈경)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고
		계약 시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A	209,000	41,800	167,200	-
59B	242,000	48,400	193,600	
68	242,000	48,400	193,600	
74	385,000	77,000	308,000	
79	176,000	35,200	140,800	
84	308,000	61,600	246,4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은경 1개소로 설치됩니다

4)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고
		계약 시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A	693,000	138,600	554,400	-
59B	737,000	147,400	589,600	
68	737,000	147,400	589,600	
74	781,000	156,200	624,800	
79	770,000	154,000	616,000	
84	1,111,000	222,200	888,8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조명으로 설치됩니다.

5) 주방 상판 +벽판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금액	계약금(20%)	잔금(80%)	비고
		계약 시	입주일 (입주지정기간 내 미입주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59A	1,254,000	250,800	1,003,200	-
59B	1,254,000	250,800	1,003,200	
68	1,166,000	233,200	932,800	
74	1,397,000	279,400	1,117,600	
79	1,287,000	257,400	1,029,600	
84	1,463,000	292,600	1,170,4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마감으로 설치되며 상기 옵션표의 비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 시 세부타입의 기본마감 위치,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의 기본과 옵션품목은 상판두께가 상이합니다.
- 실리콘의 색상 및 두께가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타일 및 석재류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나눔 부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일 및 석재류 자재 특성에 의한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요철에 의한 줄눈마감, 평활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줄눈의 색상, 규격, 사양은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침대,소파,책상,식탁,전시조명,벽부선반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TV,음향기기 등),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 (설치사항,규격),홍보관의 연출용(전시 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홍보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 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형태/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8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원자재 파동,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전용 및 공용)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열쇠인수, 이사, 소유권이전 및 고지서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열쇠인수일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인수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운동시설[실내])등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접수도서 기준이며,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2.7m
지하 2층	2.3m	2.7m

■ 내진 설계

구분	내진능력
메르칼리 등급	Ⅶ-0.162g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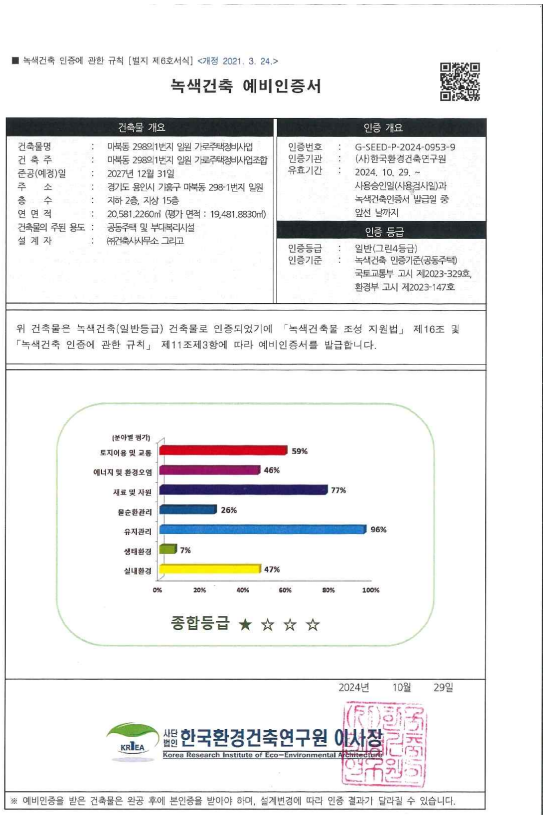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 29호)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법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3. 24.>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마북동 298의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증번호	G-SEED-P-2024-0953-9
건 축 주	마북동 298의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2024. 10. 29.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98-1번지 일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15층		
연 면 적	20,581.2260㎡ (평가 면적 : 19,481.8830㎡)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주)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47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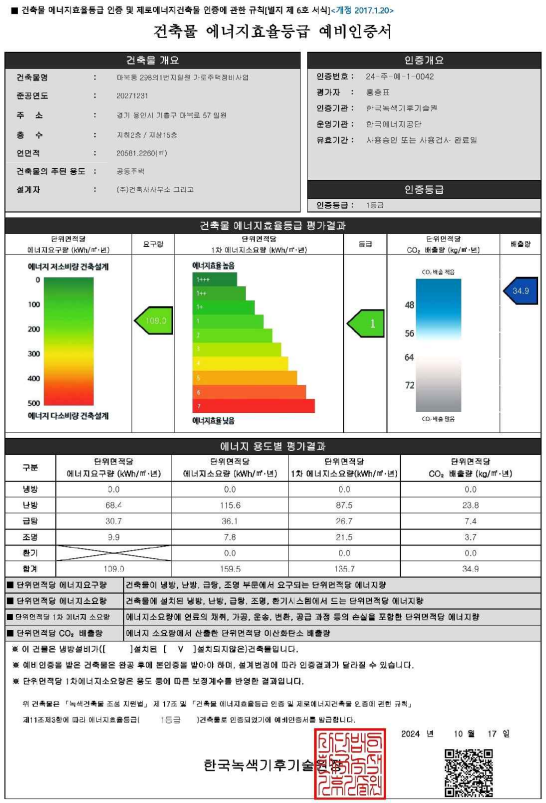
종합등급 ★ ☆ ☆ ☆

2024년 10월 29일

KRIEA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마북동 298의1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증번호	24-주-에-1-0042
준공연도	2027/12/31	평가자	홍승표
주 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67 일원	인증기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15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20581.2260(㎡)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그리고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68.4	115.6	87.5	23.8
급탕	30.7	36.1	26.7	7.4
조명	9.9	7.8	21.5	3.7
환기		0.0	0.0	0.0
합계	109.0	159.5	135.7	34.9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10 월 17 일

한국녹색기후기술원

※ 녹색건축예비인증(공동주택성능등급,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받은 사실을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휴먼텍코리아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하이텍앤솔 주식회사
감리금액	841,110,600	330,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마북동298의1번지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씨에이이앤씨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34571-0011784	124511-0002567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53번길 12, 2층(마북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19, 3층 3-1호(도우빌딩)

■ 보증관련 유의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원	보증기간
제 01212026-101-0004500 호	₩37,198,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12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 해당 사업지는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지연시에는 입주 이전 별도 안내할 예정임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사중 현장여건의 변화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동·호수에 따라 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되어 아트월, 창문열림방향, 외부 조망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전 현장, 주변현황,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분양자(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세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 피난구 개방부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난구 자체의 시공상 하자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사용상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는 시공사의 책임이나 하자로 보지 아니함. • 주변 단지의 신축 및 변경 등으로 인해 단지 내 아파트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여건에 따른 사항이므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의 변경이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주변도로는 대관협의 및 요청에 따라 도로 레벨, 차선수, 차선 수, 도로 폭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인허가 및 주변의 개발으로 인해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용인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구성초, 중학생은 구성중학교,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가능함. • 사업부지 내 재활용수거장 인접세대는 소음 및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 세대는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 및 냉매 배관(드레인포함)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과 동명칭(동수)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당해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부지 외 기타부지(도로 등)는 해당 계획이 변경(조경계획, 부지의 용도, 사업계획 등) 될 수 있음 • 기타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 및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 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동 PI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지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접근가능해야 함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창호,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용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됨 •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설치, 교체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 단지내 (공용)보도는 준공이후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함 • 단지내 기부채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등의 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조성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택지지구 개발등) 및 각종 시설(도로, 녹지, 관공서 이전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홈페이지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사업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분양안내, 홈페이지 등) 상의 마감재 이미지(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영상물, 모형물 등 포함)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부지 북동측 공개공지는 보행자도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 • 사업부지 내 재활용수거장 인접세대는 소음 및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단종, 품절, 품귀, 해당 제조업체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등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홍보관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대리석 등)의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시공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 및 PJT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시트 제조사 및 컬러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PET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 재질과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옵션으로 제공되는 품목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혹은 업체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제시될 수 있음 • 가구표면 및 창호, 마루재는 표면이 일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홍보관 /홍보물	• 홍보물은 사업시행인가 접수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전시 조형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품 및 자재의 경우 단종, 제품품절,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및 공급거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홍보관에 설치된 모형 및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아파트는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창호의 열리는 방향, 난간의 위치는 홍보관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우선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설계관련 주요 고지 사항

구분		내용
일반사항		•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는 설치되지 않음 • 생활자원 보관소는 사용성 및 해당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규격,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 입주민의 요구에 의한 위치이동은 불가)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및 부대복리 시설의 창호, 마감재 종류 및 디테일, 기계 및 전기 설비 시스템 등과 입면 변경 사항은 현장여건 및 미관개선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포함) 될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은 전체 단지의 면적을 합산 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공사중 상품성, 기능,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경비실, 생활자원 보관소, 자전거 보관대, 주차 게이트, 도로선형, 기타부대시설 등의 추가,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외부 도로폭,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 공법, 위치 등이 추가 / 삭제 / 변경될 수 있음 • 대관협의, 건축심의 및 인가조건(설계변경 포함), 각종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관련 인증기관 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함 • 지붕구조물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 단지 내/외부 동선, 인접단지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공통	• 단지 경계선에 인접한 구간은 고저차로 인하여 경사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에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될수 있고, 단차부에 옹벽이 조성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대관요청,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 측량결과 및 단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 도로(차도, 보도), 각종 옥외 시설물, 녹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생활자원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하부 시설물(전기실(발전기실 포함) 정화조 등)의 D.A(급기/배기), 배기구 등의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등에 냄새, 수증기 발생,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 확인 요망) • 단지출입구(보행자, 차량, 비상차량 등), 지하주차장램프(캐노피 포함)등과 인접한 주동 및 세대에는 전망간섭,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계약 전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직접확인 요망) • 캐노피 마감재, 위치. 색상, 돌출깊이는 도로계획,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난간대의 재질 및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공용부, 필로티 등의 계획은 현장시공 중 상품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철제문, 방화문의 설치위치, 폭, 높이, 형태, 디테일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외부 PL창호가 유리난간이 설치되어짐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및 동배치 특성상 이삿짐차 및 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한 위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및 지하주차장 지정 및 기초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및 현장 재하시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자원 보관소는 본 공사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과의 간섭 등으로 그 사이즈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중계장치가 지하층에 설치 되며,옥상층 전자파 등의 환경영향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치	• 배치상 인접한 세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생활자원 보관소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해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내 주민공동시설 및 생활자원 보관소 등으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등의 환경권과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동 주변으로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시설(지하층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동통신실, 휀룸)과 당해 DA 주변에는 해당시설 가동시 소음, 냄새, 매연,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DA의 위치 및 규모,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인근에 DA, 생활자원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변에 부대복리시설, 생활자원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진동, 소음, 냄새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동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나누기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입면 계획(마감재, 디자인, 색상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공간 반자의 설치 유무, 높이, 형태, 재질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및 지하층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폭과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날씨에서는 옥상에 설치되는 안전난간대 등의 구조물에서 진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여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옥탑 및 옥상조형물의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측벽문양, 코어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형태/마감재/재질) 및 색채는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 일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 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승강기 대수 및 인승은 동일세대 타입이라도 주동평면의 세대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창호의 크기, 형태, 열림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 주변 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세대 전면에 사면 등이 위치하는 경우 일조, 조망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또는 1층에 설치된 로비공간(우편물 수취함 등)은 공용시설물이며 관리 여부에 따라 우편물 분실 등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재의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색채,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발코니 외부 창호(샤시)는 설치 또는 미설치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아파트 측벽의 마감재, 디자인, 컬러, 형태 등은 변경될수 있음 • 아파트 측벽 차별화 부분의 마감재 디자인, 컬러, 형태등이 변경될수 있으며, 위치별 금속마감 적용에 따른 눈부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등에 의한 생휠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및 코아인근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상층 출입구 부근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용 연결송수구, 상수도 소화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부대 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접수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 단지의 부대시설은 대지특성상 지하 또는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 시설의 실외기 설치공간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펜스는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은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에서 단지내 부대시설로의 접근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음
	조경	• 단지 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 처리될 수 있음 • 조경 수목의 종류 및 규격, 위치는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지장물과의 간섭 및 설계개념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시설내 개별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형태는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면적(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범위 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은 적용 위치 · 구간 · 면적, 자재 등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자원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생활자원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 시 최종 옥외배관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음 • DA 등 건축구조물과 실외기 설치로 인해 저층세대의 조망 및 생활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 할수 있으며 입주 및 이사시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경사면 발생에 따라 계단, 램프 등이 삭제 또는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경사 처리에 따른 녹지 폭 축소될 수 있음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 단지의 각종 식재 및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지하 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사업1인가 접수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협의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 개소, 위치, 타입비율 등의 주차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접하는 층수는 경사지 특성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보다 차고가 높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음 • 지하 동출입구는 사용성, 상품성 개선을 위해 평면 및 입면 형태, 마감재 등 계획안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됨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임 •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 진입 가능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함
	주 출입구 / 문주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향후 인허가 진행상황 및 인근단지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 삭제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벽, 벽체(욕실벽, PD를 포함한 비내력골조벽, 조적벽, 경량벽체 등)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중에 경량벽체, 비내력골조벽 또는 조적벽으로 변경(설계변경 동의 포함)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석고보드 벽체의 구성은 부위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거실 천장고는 H:2,300MM (2,220MM)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1층 세대는 거실 천정고 2,400mm, 욕실 2,220mm)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공간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하부, 양변기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상부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커튼박스,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하부세대 비확장시 상부 세대 바닥 난방배관 구조는 확장형 기준층과 다르게 적용됨 •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붙박이장,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품질 개선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가구의 세부 사이즈 및 내부 구성 등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수납 개선 및 사용성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 및 걸레받이 사이즈 등은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 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우물천장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및 바닥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 제공여부는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및 악세서리 제공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평면으로 산정되며, 옵션으로 추가되는 마감재는 치수산정에서 제외됨 • 각종 인증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 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구배,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내 타일 및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세대 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보일러, 환기시스템장비,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실시공시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류는 건축도면과 크기, 위치, 디자인, 디테일 등이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비내력벽체의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면적의 변경이 없이 내부 벽체는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과 도면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홍보관 기준이 우선이므로 이점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주방 외부창호의 사이즈에 따라 주방가구 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우물천장은 조명 및 에어컨 실내기 설치로 일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 시 동등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욕실의 공법이 건식공법이 습식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실외기실	• 발코니에 설치된 단차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2 및 발코니1, 현관 등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동일한 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측세대/ 중간세대 비확장 발코니 면적은 법규에 따른 면적산정으로 동일하나, 측벽에 면한 발코니는 세대 내부의 추가 단열재 설치 및 마감두께 등의 이유로 법규상의 면적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다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1,2(실외기실등)에는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1,2 등에 설치된 우수선홈통은 세대내의 샤프트 내부로 이동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별도의 걸레받이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1,2(실외기실등)등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사양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등에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난방 및 온수용이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형 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관에 비해 발코니1,2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발코니 현관바닥, 욕실벽 및 바닥 타일 나누기는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등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릴 창호의 재질, 형태, 사양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상부세대 바닥드레인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1,2등에 설치되는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커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주기적인 실내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함) • 단위세대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부위 상부가 외기가 아닌경우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발코니 상부로 욕실환기용 배관이 설치될 경우 천장마감재가 추가설치 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난간의 높이와 창호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본형 선택 세대가 입주 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청에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 진행을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어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 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이 환기구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경우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관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침실 등 난방공간에 직접 면한 실외기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동일한 단위세대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창호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음 • 외부창호는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상이하게 (창호 나누기 크기 변경 및 창호 프레임 추가 등)시공될 수 있음 • 창호 및 문 열림방향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도면상 열림방향이 상이할 경우 홍보관이 우선함) • 외부창호의 색상은 색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 / 설비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 분전반은 침실 설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설치기준: 팬트리 및 신발장 설치 불가) 기준이며, 현장 배치 검토에 의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 등) 및 LED 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임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되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용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차단기 주변 가스배관은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 법규에 따라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고 렌지후드 덕트커버에 자동식소화기용 전기차단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덕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는 가스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디퓨져 위치, 사양, 개소 등은 설비 ,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1~2 층(필로티포함) 및 최상층에 한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됨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가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배관방식은 층하 배관으로 시공됨(위층 세대 욕실 배관이 하부층 천장속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위층 세대의 배관 교체 및 청소 등의 유지보수 발생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함)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환기시스템 설치 위치에 따라 창호 및 실외기실 루버 크기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입주 후 관리비용이 발생됨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배기 방식은 직배기 혹은 공동배기 타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렌지후드, 전열교환 환기설비 등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청소 및 교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 비용이 발생함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이며, 설치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최상층 발코니 우수 입상관은 지붕층 드레인 위치에 따라 부속을 사용하여 위치 이동이 될 수 있음 • 세대내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는 위치, 사양, 개소 등이 변경되거나 타입별로 다를 수 있음

		• 보일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홍보관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행정소송(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이 진행중인 사업지이므로, 정확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서 사업주체 및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는 1.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2.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제출 3.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7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내역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 견본주택에는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s://www.중앙하이츠구성플랫폼시티.com

■ **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19-1 ☎ 1899-1008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